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센터와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사랑노인복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, 수급자(보호)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-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2. 이용계약

센터와 수급자(보호자)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(보호자)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- ① 센터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센터는 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”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- ③ 센터와 수급자(보호자)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(이하 ‘계약서’라 한다)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수급자(보호자)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(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.)
 - 계약당사자(서명 포함)
 -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, 이용시간
 -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
 -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

3. 계약기간

-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.
- 등급 변경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(보호자)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(기본의무) 기관은 수급자(보호자)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.

- 기관 일반정보, 제공 서비스 유형, 서비스 시간, 횟수, 비용부담, 제도 설명, 등급 등에 관한 사항.
-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-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

4. 준수사항

-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.

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

1) 이용대상

- ①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등급을 받은자

2) 모집방법

- ① 치매, 파킨슨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- ② 이웃주민 주위어르신 등 센터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.
- ③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목욕)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하고 발굴한다.
- ④ 수급자(보호자)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.

3) 서비스 제공의 절차

- ① 신청 접수: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,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자 여부를 확인한다.
-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: 관리책임자 또는 중간관리자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,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한다.
- ③ 서비스 제공계획: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, 낙상평가, 욕창평가, 인지기능 검사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.
- ④ 서비스 계약체결: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.
-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: 센터는 수급자(보호자)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설명 후,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한다.
- ⑥ 서비스 제공: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수급자(보호자)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(보호자)에게 통보한다.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,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한다.
- ⑦ 사후관리: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.

서비스 이용료

1.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(2026.1.1.기준)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7,450	150분 이상	50,640
60분 이상	25,320	180분 이상	57,020
90분 이상	34,120	210분 이상	63,530
120분 이상	43,430	240분 이상	70,080

○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재가급여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6,48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7,9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

*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	재가급여
일반	일반	15%
	100분의 40감경 하는자	9%
	100분의 60감경 하는자	6%
기초수급권자		0%

2. 본인부담금 납입

- 1) 센터는 매월 수급자(보호자)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**10일**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.
- 2) 대상자(보호자)는 매월 **15일**까지,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3)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(보호자)가 센터명의 농협계좌(351-0961-9029-53)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(보호자)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.
- 4)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하여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급자(보호자)에게 발급한다.

3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- 1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를 거쳐 재계약서를 작성한다.
 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
 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

-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
- ④ 이용료는 서비스 제공시간의 수가와 횟수에 의해 다르다

계약해지

1. 계약해지

- 1) 계약해지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- 2)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 -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
 - ④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할 때
 -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

참사랑노인복지센터는 예수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며
어르신을 공경하고 극진히 봉양하여 신체적,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
어르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
시켜주어야 한다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운영한다.